종교인소득 과세 매뉴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종교인과세 TF팀

총 회 장 신상범 목사
팀　　장 김진호 목사
팀　　원 고성삼 장로, 정병모 장로, 강성식 장로
김재봉 장로, 김세영 안수집사
간　　사 손주헌 목사
편　　집 활천사·교육국

펴 낸 곳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7
전　　화 02-3459-1071~3
홈페이지 http://www.kehc.org

목 차

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배경 ····· 6
Ⅱ. 종교인 과세 연혁 ····· 7
Ⅲ. 종교인소득(기타소득)관련 법령 ····· 8
Ⅳ. 주요개념 및 과세체계 ····· 9
1.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주요 개념 ····· 9
2. 종교인소득 소득구분 ····· 11
3. 비과세소득 ····· 12
참고1.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 14
참고2. 과세와 비과세 소득 구분 ····· 15
참고3. 목회확동비(종교활동비)의 구분 ····· 16
참고4. 세부 과세기준(안) ····· 17
4. 종교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 20
5.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특례 ····· 21
6.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 23
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예외 ····· 25
8.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26
9.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사항) ····· 30
10. 종교인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32
1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 37
참고1.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과세체계 비교 ····· 38
1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 39
13. 질문•조사 ····· 46
14. 근로•자녀장려금 ····· 47
참고1. 종교인소득 관련 세부담 사례 ····· 49
참고2. 종교인과세에 대한 사례 ····· 51
참고3. 소득 수준별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세액 비교 ····· 53
Ⅴ. 개정세법의 특징 ····· 54
Ⅵ.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법 ····· 56
Ⅶ. 종교인소득 과세관련서식 목록표 ····· 58
Ⅷ.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 ····· 59
참고1 교회와 목회자 준비사항 목록표 ····· 61
참고2 세무서 제출서류 : 교회와 목회자 ····· 62
Ⅸ. 종교단체의 세무관리 ····· 63
Ⅹ. Q & A ····· 68

[부록 1] 종교인소득 과세관련서식 ····· 77
[부록 2]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92
[부록 3] 교회 정관 견본 ····· 93
[부록 4] 교회 재정 운용 규칙 견본 ····· 97
[부록 5] 교회당 내 사택 전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대책 ····· 100

■ 인사말

총회장 신상범 목사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뉴얼(Manual)에 대해 ‘설명서’, ‘안내서’, ‘지침’의 세 가지 순화어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설명서를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이라고 풀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내서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주는 책이나 글”이라고 하고, 지침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매뉴얼은 다루고자 하는 특정한 사항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우리 교단은 지난 1년간 착실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제111년차 총회임원회는 교단 내 세무 및 회계 전문가와 함께 총무를 중심으로 ‘종교인과세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정부정책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종교인소득 과세 매뉴얼’을 여러분 앞에 내어 놓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매뉴얼은 다른 어떤 교단에서 발행한 안내서보다 종교인과세의 본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설명서보다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현장에서 종교인과세를 대응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누구보다 충실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밤이 늦도록 총회본부에 모여 수고하신 TF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갈고닦은 전문지식을 교단을 위해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교단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들의 수고로 2,700여 지교회 모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서툴겠지만 ‘종교인소득 과세 매뉴얼’은 그 서툰 길을 바로 안내하는 충실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한 보고, 성실한 세금납부로 모범이 되는 성결가족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 발간사

교단총무 김진호 목사

지난 50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와 종교 혹은 시민단체와 교회의 대립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 이 문제는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 통과와 12월 29일 대통령의 재가로 일단락되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본부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방송과 신문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을 수집하였고, 범 교단적인 대응기구를 구성하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담당자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수차례 접촉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교단 내에서는 총회교육원과 지방교육원을 통해 지방회별 종교인과세 기본 교육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종교인과세가 무엇이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세금'의 문제는 무척 생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제111년차 총회임원회는 교단총무를 팀장으로 교단 내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모여 '종교인과세 TF팀'을 구성하여 지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였고 정부가 발표한 법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 교단의 준비사항을 참고하여 '종교인과세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매뉴얼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법령 소개와 더불어 과세 대상의 범위와 과세 비과세의 범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소득신고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회별 교육에서 자주 언급된 질문들을 Q&A에 담고 익숙하지 않은 각종 서식을 부록을 통해 안내하여 지교회 목회자들과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본부 홈페이지에 본 자료집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링크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종교인과세이기에 지교회와 과세당국 사이에 여러 오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본 매뉴얼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총회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본부도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과 시행령에 빠르게 대응함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교회와 목회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매뉴얼을 사용하는 모든 성결가족과 지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배경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발전은 놀라웠다. 한국전쟁은 동서냉전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신생독립국가로서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냈다. 한국의 변화를 보고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도 많다. 그런 한국이 안보불안, 성장률저하, 저 출산 고령화, 청년실업증가, 가정불화의 증가, 복지수요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위기라고들 한다. 이런 와중에 종교인 과세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간 GDP는 1,400조원에 이르고 연간 예산규모는 420조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소득대비 세금부담율이 30%가 넘는 셈이다. 종교인을 포함하여 전국민이 알게 모르게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쯤은 상식이 되었다. 법인과 개인을 혼동하던 시대도 지났다. 목회자와 교회를 동일시하던 의식구조도 많이 변했다. 우리나라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약 400조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세법체계도 잘 정비되어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하지도 못한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행정전산화가 진전되고 각종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세원발굴이 가능하게 되었다.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조세마찰이 일어나고 세대간 갈등도 생기고 있다.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인, 종교인 등에게 기대하는 윤리 도덕적 수준이 높아졌다. 비자금조성, 돈세탁을 통한 탈세 등에 대해 매우 나쁜 인상을 갖게 되었고 그 동안 종교계에 대한 과세 여부가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종교계 특히 개신교가 사회에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 종교인의 비리문제가 나올 때마다 특종을 만들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보도하는 언론의 경향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인 과세는 대세가 되었다. 과세당국이 과세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바야흐로 사회는 법령에 의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접목하여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과세가 과세의 열외였지만 이제부터는 사회로부터 격리 내지는 소외로 취급될 것이다. 납세문제가 약점이 되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Ⅱ. 종교인 과세 연혁

종교인 납세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8년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후 철회
○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세금납부 주장
○ 1994년 가톨릭 법률규정 없이 스스로 신고 납부
○ 2006년 시민단체, 국세청장 직무유기 고발 : 과세 않는 것이 관행.
무혐의 처리 됨.
○ 2012년 기재부 장관 종교인과세만 예외로 할 수 없다 주장함.
○ 2013년 9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2015. 1. 1.부 터 전체소득의
20%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① 원전징수 예외 등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 통과안됨
/ 원전징수 반기납부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교회 원전징수 불이행시 종교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② 필요경비 80%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3/11/5공포
/ 기타소득 사례금에 종교인 사례금을 명시(41조 10항)
/ 사례금의 필요경비 80%(87조)
○ 2013년 12월 :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룸
○ 2014년 2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4월로 미룸
○ 2014년 4월 : 정부 종교인소득세 조항 신설 검토
○ 2014년 12월 25일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기 1년 유보
○ 2015년 8월 :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종교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으로 신설)
○ 2015년 12월 2일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8년 1월 1일 시행
①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소득명칭을 변경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③ 과세 당국의 종교단체 장부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2015년 12월 15일 개정하여 과세하되 201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함
○ 2017년 12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Ⅲ. 종교인소득(기타소득) 관련 법령 규정

구분	내 용	법 령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의 범위 및 기타소득 과세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소법 § 21①26호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 신고 허용	소법 § 21③
	종교단체의 범위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소령 § 41⑭
	비과세 종교인소득 및 종교관련종사자의 범위	소법 § 12 5호
	비과세 대상의 세부기준 -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비용(종교활동비 포함), 자녀보육, 사택제공.	소령 § 19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의 기타소득 필요경비계산 - 2천만이하 80%, 지급액 증가에 따라 비율 감소(80~20%)	소령 § 87 3호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 예외 -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소법 § 73①,②
	종교단체의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소령 § 186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월 지급액-비과세소득) × 12 - 필요경비] × 20% ÷ 12	소령 § 202④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 소득 지급 시(미지급 2월말)	소법 § 145의3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 - 필요경비 공제 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납부할세액 산출	소령 § 202의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예외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소법 § 155의6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소법 § 164
기타	종교인소득 관련 질문·조사 -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탈루, 오류 발견시 수정신고 우선 안내	소법 § 170
서식 (7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호), 기타소득지급명세서(23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25호의3),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소칙(별지서식)

※ 소법 = 소득세법, 소령 = 소득세법 시행령, 소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Ⅳ. 주요개념 및 과세체계

1.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주요 개념

가. 종교단체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또한「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부동산 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나. 종교관련종사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한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종교활동종사자 】

종교관련 종사자 (248)	성직자 (2481)	목사(24811)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신부(24812)	천주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제, 주교, 신부, 부제)
		승려(24813)	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승려, 스님, 법사)
		교무(24814)	원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무, 원불교)
		그 외 성직자 (248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 (전교, 대종교, 유교)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 (2489)	수녀 및 수사 (24891)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하며, 신자들에게 신앙 및 정신적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수녀, 수사)
		전도사 (24892)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자 (248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 (포교사, 강도사)

다.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 종교인소득 분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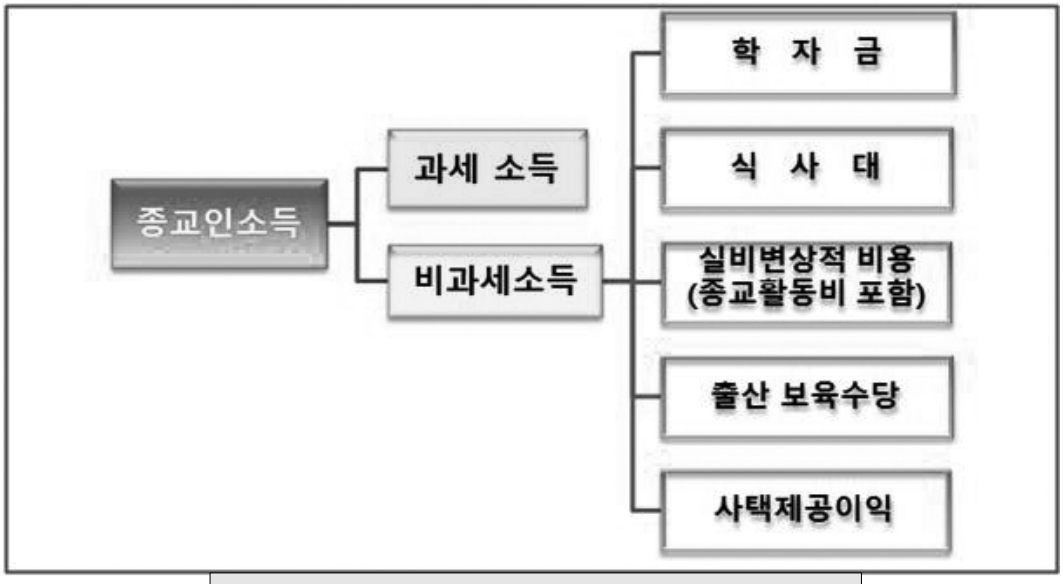

단, 비과세소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비과세됨

【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주요 금품 내역 】

▸ 기독교

사례비	설교하고 지급받는 대가 (청빙계약에 따라 액수지급방법 사전 약정)
목회활동비 (종교활동비)	목회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판공비 (접대비, 심방비, 도서구입비 등)
사택 제공	종교단체가 소유·임차한 사택을 종교인에게 제공
학비보조금	본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퇴직연금(은급금)	각 교단·종단 내부규정에 의해 퇴직한 종교인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
기타	휴가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의료비, 식비, 격려금, 퇴직소득 등

2. 종교인소득 소득구분

가. 기타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령에서 열거한 소득이다.

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다. 퇴직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

3.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가. 학자금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교회로부터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소득임).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③「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나. 식사 또는 식사대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② ①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금액 등을 말한다.

①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② 종교관련종사자가 벽지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③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또는 물품

④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라.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마. 사택제공이익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과,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참고 1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구 분	지 위		과 세 내 용
종교인(목회자)	담임목사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 : 근로자성 부인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부목사	근로자성 부인(판례)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강도사 전도사	근로자성 인정(판례)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기타	원로목사, 협동목사, 선교사(교회가 직접 파송한 경우) 등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 해외선교사에 대한 지원은 선교비로서 비과세
비종교인(근로자)	반주자, 지휘자, 사무행정 직원, 관리집사, 운전기사, 음향미디어직, 기타 기능직 등		• 근로소득 대상 • 반주자와 지휘자의 경우 기타소득 신고 (4.4% 원천징수)

참고 2	과세와 비과세 소득 구분

지 급 항 목	과 세	비 과 세
사례비(생활비)	• 사례비, 상여금, 수양비, 의료비, 체력단련비, 연구비, 교단연금 적립금, 도서비 •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사례비로 간주	• 도서 등을 교회의 공금으로 구입하여 제공하면 비과세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	• 목회비를 목회자의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목회자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 그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	• 목회(종교)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금, 접대지원금, 판공비, 기밀비, 경조사비, 통신비 • 사례비와 구분 기장•관리 • 교회명의 통장 사용
식 대	• 식대명목으로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 월 10만원 초과 금액	• 목회활동을 위해 목회자가 신도와 식사하는 비용으로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 • 식대명목으로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원 : 월 10만원 미만
출장비, 여비	•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된 금액
차량유지비	• 목회자 명의 차량을 목회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초과 지원금 • 렌트카 사용비용 지원	• 교회명의 차량 사용, 공과금 • 목회자 명의 차량을 목회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미만 지원금
공적 보험료 (4대 보험료)	•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목회자 개인부담 (교회에서 지원할 경우 사례비로 간주함)	•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교회가 부담하는 50%는 비과세 (본인 부담분 50%를 교회가 부담할 경우는 과세)
사택제공, 공과금	• 목회자 개인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교회로부터 사택비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 교회소유사택을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교회가 임차하여 목회자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
학자금	• 목회자 본인 : 최고경영자과정 (AMP)등록금 등 • 자녀 학자금 :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목회자 본인 :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 • 자녀 :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보육비		• 월 10만원 미만의 출산지원금 또는 6세 이하의 보육지원금
퇴직금, 연금적립금	• 일시 지급퇴직금 • 교단 연금적립금	
부흥회, 외부강사료 등	•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4.4% (종합소득세 신고)	
심방사례비, 주례사례비		• 성도가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시 비과세

참고 3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구분

사용주체	유 형	기장, 관리	비과세	과 세	신 고	세무조사
종교인 (목회자)	종교단체 (교회)의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종교인 이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금액	목회자 개인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종교단체의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 없음	종교단체의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
		목회자 개인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목회자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귀속되지만 종교활동비 액수를 신고 하는 경우 해당금액 비과세	종교활동비 총액을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하여 신고	종교인소득에 귀속될 소지가 있어 세무조사대상
	종교단체 (교회)의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종교인에게 지급한 활동비			법령상 종교 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종교인 소득 으로 과세		법령상 종교 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
종교인 이외의 종교단체의 기관•사람 (장로.관리집 사 등)	종교단체의 활동비로서 종교인과세와 무관함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 없음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님

참고 4	세부 과세기준(안)

※ 기획재정부가 2017년 9월 9일 제시한 세부과세기준안은 다른 종교와의 조세 형평성 등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에 목회자의 순수한 생활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목회활동비는 종교활동비로 보완하다. 그러나 종교인소득 중 과세항목과 비과세항목을 구분하는 참고자료로는 매우 유용하다.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항 목		종교인소득			근거규정
		과세	비과세	제외*	
생활비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	○			소법 § 21①26호
사례비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	○			소법 § 21①26호
상여금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			소법 § 21①1호
격려금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소법 § 21①1호
공과금, 사택공과금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			소득통칙20-0…4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한 경우	○			법인46013-2198 ('00.10.3.1)
휴가비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			소령 § 38①14호
특별격려금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특별 격려금	○			소법 § 20①1호
이사비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한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1362('04.10.5.)
건강관리비, 의료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	○			서면1팀-275 ('05.3.9.)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소령 § 19③2호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서면1팀-275 ('05.3.9.)
접대(지원)비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소령 § 19③2호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소령 § 38①1호
종교인 도서비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도서비	○			소법 § 21①26호
종교인 연구비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			소법 § 21①26호
종교인 수양비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양비	○			소법 § 21①26호

판공비, 기밀비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소법 § 19③2호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소령 § 38①1호
축•조위금	종교단체 명의로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소법 § 19③2호
	축·조위금 명목으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서면1팀-275 ('05.3.9.)
교육비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		○		소령 § 19①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 등)	○			소령 § 19①
	자녀 학자금(해외유학비 포함)을 지원한 금액	○			소령 § 38①2호
차량유지비	본인소유 차량 이용 월 20만원 이하 금액		○		소령 § 19③2호
	본인소유 차량 이용 월 20만원 초과 금액	○			소령 § 19③2호
	종교단체 소유 차량을 종교활동에 이용 (종교인이 유류비 등을 선지불하고 종교단체와 실비 정산하는 경우)			○	소령 § 19③2호
	타인소유 차량 이용하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 받는 경우 * 다만, 종교활동 목적에 사용하고 유류비 등에 대해 실비 정산하는 경우 비과세	○			소득46011-1130 ('95.4.25.)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			소령 § 38①12호
출산(보육) 관련 비용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지원 (월 10만원 이하)		○		소법 § 12 5호 아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지원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1058('05.9.6.)
	7세 이상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 * 6세 이하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1월 1 일을 기준으로 판단	○			소법 § 12 5호 아
통신비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종교단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부분이 정산하지 않은 부분)	○			원천세과-636 ('09.7.22.)
사택지원	종교단체가 적접 소유·임차하여 제공		○		소칙 § 10의2
	금전으로 지원하는 경우	○			소득22601-1760 ('95.9.5.)
집회출장비, 여비,교통비	실비변상적 지급액(내부규정에 의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통제절차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 포함)		○		소령 § 19③2호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	○			법인 46013-727 ('98.3.25.)
식사, 식사대	목회활동을 위해 신도와 식사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		○		소령 § 19③2호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현물식사 제공 없음)		○		소령 § 19②2호
	월 10만원 초과분 (현물식사 제공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 상담1팀-1603 ('07.11.22.)

	현물식사만 제공하는 경우		○		소령 § 19②1호
	현물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현금 지급분)	○			법인46013-1683 ('97.06.23.)

○ 종교인이 신도 또는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

항 목		종교인소득			근거규정
		과세	비과세	제외	
심방사례비	신도가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소법 § 21①26호
	신도가 종교인을 통해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경우 *신도 → 종교인 → 종교단체 - 종교단체는 신도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	소법 § 21①26호
주례비	신도가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소법 § 21①26호
	신도가 종교인을 통해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경우 *신도 → 종교인 → 종교단체 - 종교단체는 신도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	소법 § 21①26호
학교 등에서 지급받는 강의대가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종교인이 지급받는 경우 -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학교 등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종교인이 학교 등에서 받은 강의대가를 학교 등에 기부하는 경우 - (강의대가 지급시) 학교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독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기부 시) 학교 등은 종교인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소법 § 20① 등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종교인 소속 종교 단체가 지급받는 경우 - 종교인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종교단체가 강의대가 등을 종교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의무 발생			○	종교의식 집행 등 종교관련종사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부흥회 사례비	종교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소법 § 21①26호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종교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종교인이 사례비를 지급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례비를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	소법 § 21①26호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지급한 경우			○	소법 § 21①26호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지급하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별도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소법 § 21①26호
해외선교비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			소법 § 21①26호

	지급받는 경우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으로부터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법 § 21①26호
종교단체 지원비	다른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비를 소속 종교단체로 귀속시키는 경우 - 종교단체를 위하여 사용한 지원비는 과세 제외가 원칙 * 지원비를 지급받은 종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소법 § 21①26호
	다른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비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			소법 § 21①26호

4. 종교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가. 필요경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종교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호).

【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 20%

다만, 종교인소득을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의 계산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5.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특례

가. 원천징수 납부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반기별납부 특례

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

신청기간		- 직전년도 12월 1일 ~ 12월 31일 (승인시 1~6월 급여 지급분을 당해연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당해연도 6월 1일 ~ 6월 30일 (승인시 7~12월 급여 지급분을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신청 방법	전자신청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6.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매월분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은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매월지급하는 소득 × 12*	* 종교관련종사자가 2월 이후에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남은 개월 수
-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	종교인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	산출세액	
÷	12*	* 종교관련종사자가 2월 이후에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남은 개월 수
=	원천징수세액	

○ 사례비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항 목	금 액	비 고
① 연간 환산금액 (@×12월)	24,000,000	
② 필요경비	18,000,000	1,600만원+2천만원 초과분의 50%
③ 연간단위 추정소득금액 (①-②)	6,000,000	
④ 원천징수 세율(20%) 및 세액	1,320,000	소득세 120만원, 지방소득세 12만원
⑤ 월 단위환산 원천징수세액 (④/12월)	110,000	소득세 10만원, 지방소득세 1만원
⑥ 원천징수 후 지급할 금액 (@-⑤)	1,890,000	

※ 당해 연도 중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월 수를 적용하며 또 개시한 경우에는 12개월 대신 해당 월을 포함한 과세기간 중 잔여 개월 수를 적용한다.

다만,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간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른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할 수 있다.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연간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 】

	연간 소득	
-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6~4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결정세액	
÷	12*	* 종교관련종사자가 2월 이후에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남은 개월 수
=	원천징수세액	

③ 매월 지급 받는 사례비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비교

구 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징수의무자	지급자인 종교단체(교회)	지급자인 종교단체(교회)
원천징수세액 (4인가족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월220만원, 원천징수세액 없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월220만원, 원천징수 세액없음)
기본공제 적용	간이세액표로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 확정신고 시 기본공제 적용
연말정산시 세액계산	과세대상소득 = 총급여 - 비과세소득 과세표준(=과세대상소득-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 각종소득공제 - 각종 세액공제 순으로 차감하여 계산	과세대상소득 = 총급여 - 비과세소득 과세표준(=연간환산금액-필요경비)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 각종소득공제 - 각종 세액공제 순으로 차감하여 계산
공적보험	징수의무자와 분담하여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가입 부담**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자인 교회의 연말정산으로 종료	소득자가 직접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소득 계산	소속관계 종료하는 경우 지급금액	소속관계 종료하는 경우 지급금액

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경우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55조의6).

8.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 연말정산 시기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나. 연말정산 방법

①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5조의3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교관련종사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소속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한 달의 종교인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종교관련종사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45조의3제2항).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항목 】

구 분	공 제 항 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투자조합출자 등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소득세법 제145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말정산 세액계산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세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소득세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 】

	종교인 소득	
-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	종교인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등 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0%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세액	

* 연금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적용함

【 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 15%	(과표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24%	(과표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35%	(과표 ×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8%	(과표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3억원 초과 40%	(과표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 42%	(과표 × 42%) - 3,540만원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의 계산 사례**

종교관련 종사자로 배우자, 자녀 2명(20세 이하) 4인 가족으로 사례비가 월300만원, 식비 월10만원, 교통비 등을 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액은 얼마일까

[2018년도 기준]

구 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과세대상 사례비 ①		3,600만원=300만원×12개월	3,600만원=300만원×12개월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②		1,065만원=750만원+315만원	2,400만원=1,600만원+800만원
소득공제(4인 가족) ③		600만원=150만원×4인	600만원=150만원×4인
4대 보험④ (본인부담)	국민연금 (4.5%)	1,620,000원 = 3,600만원 × 4.5%	-
	건강보험 (3.29%)	1,184,400원 = 3,600만원×3.29%	-
과세표준금액⑤ (①-②-③-④)		16,545,600원	6,000,000원
산출세액 = ⑥×세율		1,401,840원	360,000원
각종 세액공제 (기부금 360만원)		근로세액 716,000 자녀세액 300,000 기부금세액 380,250 등	자녀세액 300,000 기부금세액 60,000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액		5,590원	0

→ 그 외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장기펀드저축,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에는 적용이 배제됨

④ 환급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9.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사항)

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는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여부와 상관없이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에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무관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특례 적용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 원천징수시기 특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종교인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가.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①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55조의6).

구 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종교인소득 이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나. 신고 기간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제70의2조제2항, 제74조)

구 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일반적인 경우	1.1.~12.31.	다음 해 5.1. ~ 5.3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1.~12.31.	다음 해 5.1. ~ 6.30.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1.1.~사망(출국)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다음 해 1.1.~5.31.중 사망(출국)시	1.1.~12.31. 다음 해 1.1.~사망(출국)일	

다. 납세지 (소득세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유 형	납 세 지
거주자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통칙6-0…1)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2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영5조①2)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타의 경우	•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의 경우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라. 신고서 작성

①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5))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 계산방법 】

	종교인 소득	
-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	종합소득(종교인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등 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0%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가산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적용함

② 종교인소득 이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종교인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신고서 제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

①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

바.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① 납 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1.~5.31.(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1.~6.30.)중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76조제1항)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분납할 세액」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된다.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없음,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 기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가능하다.

② 환 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의 잔여금을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신고서에 표기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교부하여 준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의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기법 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환급금은 해당 계좌로 이체됨)

1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의2)

2개 이상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인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소득세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1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소득금액			○	○	○
소득공제	인적	기본(본인·부양가족 人당 150만원)	○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필요경비)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
		장기펀드 저축액	×	○	×
		고용유지근로자 임금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	○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
		개인연금저축	○	○	○
과세표준					
(×) 세율(6~40%)					
산출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
	재해손실(자산상실비율 적용) 등		○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 한도))		○	○	○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 한도)	△	○	×
		기부금(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필요경비)	○	○
	표준세액공제(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7만원)	○(13만원)	○(7만원)
	조특법	전자신고(2만원)	○	○	○
		정치자금기부금 등	○	○	○
결정세액					

*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70%, 5백만원 초과 40%, 1천5백만원 초과 15%, 4천5백만원 초과 5%, 1억원 초과 2%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50%, 4천만원 초과 30%, 6천만원 초과 20%

1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가.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① **퇴직 소득** :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인 교회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4호 2016.2.17.신설〕으로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일시금으로 받거나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는 금액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금액.

퇴직소득의 산출세액 = 과세표준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 공제) × **세율**

② **퇴직소득 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 +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금액

Ⓐ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

근 속 연 수	필 요 경 비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금액

환 산 급 여	소 득 공 제 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금액의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금액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

③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공제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3억원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9,01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8%	2,390만원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절차

Ⓐ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 공제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2 × 정산 근속연수

Ⓒ 원천징수할 퇴직소득 세액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퇴직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10%로 별도로 원천징수

→「국세청 홈텍스」화면에서「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⑤ 원천징수 시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며 단 1월~11월 퇴직자에게 12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31일 원천 징수하며, 12월 퇴직자에게 12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원천 징수한 후 신고 납부한다.

⑥ 납부 및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일

Ⓐ 납부일 : 퇴직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

(반기별 승인 납부자는 1~6월, 7~12월 반기 후 다음달 10일)

Ⓑ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일 :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발급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소득세법 →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

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40%)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 + ㉯)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 2012년 이전분
= (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 2013년 이후분
= (과세표준÷근속연수)×5×세율÷5×근속연수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38%	19,400,000원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
= (㉮ - ㉯)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35%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 × 적용비율) + (② × 적용비율)
①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②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사례≫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과세이연**한 경우 (’ 16년 퇴직)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2.01.01 입사하였고 2016.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5천만원 중 2천만원만 2016.04.01. IRP계좌로 이체.**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7,939,185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3,200,000		
정률공제	75,200,000	= 188,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8,000,000	= 400만원 + 80만원(15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4,8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76,853,333 (104,800,000×11/15)	27,946,667 (104,800,000-76,853,333)	104,800,000
(÷) 근속연수	11년	4년	
(=) 연평균과세표준	6,986,666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4,933,33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419,199	4,159,999	
(×) 근속연수	11년		
÷ 5 × 근속연수		÷ 5 × 4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4,611,189	3,327,996	7,939,185

② 개정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12,225,000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000,000	
근속연수공제	8,000,000	= 400만원 + 80만원(15년 - 10년)
(=) 환산급여	144,000,000	= (188,000,000-8,000,000) ÷ 15년 × 12
(-) 환산급여공제	81,500,000	= 61,700,000 + (144,000,000-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62,500,000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9,780,000	
÷ 12 × 근속연수	÷ 12 × 15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2,225,000	

③ 차감원천징수세액 : 2,865,800원

특례적용산출세액*	8,796,348	(① 7,939,185 × 80%) + (② 12,225,000 × 20%)
(-) 기납부세액	4,020,000	= 4,776,348 × (20,000,000 ÷ 50,000,000)
(=) 차감납부세액	4,776,348	
(-) 이연퇴직소득세	1,910,539	
(=) 차감원천징수세액	2,865,800	

* (2016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80% : 20%

④ 퇴직금 금액에 따른 세부담액 (목회자 등의 퇴직금 금액에 따른 소득세 부담액)

기본가정 : 1.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

2. 종전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시, 기존기간은 편의상 연분연승법에 5의 환산배수를 모두 적용하였음.

3. 관련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한 금액

		근속연수			
		5년	10년	15년	20년
퇴직금 금액	2천만원	580,800	359,040	137,280	0
	3천만원	1,313,400	675,840	454,080	232,320
	4천만원	2,151,600	1,161,600	770,880	549,120
	5천만원	3,093,420	1,729,200	1,087,680	865,920
	6천만원	4,360,620	2,521,200	1,511,400	1,182,720
	7천만원	5,627,820	3,351,150	2,065,800	1,499,520
	8천만원	6,914,820	4,192,650	2,778,600	1,927,200
	9천만원	8,786,250	5,060,550	3,570,600	2,481,600
	1억원	10,690,350	6,033,720	4,384,875	3,036,000
	1.1억원	12,594,450	7,300,920	5,226,375	3,828,000
	1.2억원	14,498,550	8,568,120	6,067,875	4,620,000
	1.3억원	16,514,520	9,835,320	6,909,375	5,418,600
	1.4억원	18,778,320	11,102,520	7,820,175	6,260,100
	1.5억원	21,066,320	12,369,720	8,760,675	7,101,600
	1.6억원	23,620,520	13,636,920	10,011,540	7,943,100
	1.7억원	26,174,720	15,435,750	11,278,740	8,784,600
	1.8억원	28,728,920	17,339,850	12,545,940	9,639,300
	1.9억원	31,283,120	19,243,950	13,813,140	10,579,800
	2억원	33,837,320	21,148,050	15,080,340	11,520,300
	2.1억원	36,391,520	23,052,150	16,347,540	12,722,160
	2.2억원	38,242,226	24,956,250	17,614,740	13,989,360
	2.3억원	41,499,920	26,860,350	18,881,940	15,256,560
	2.4억원	44,054,120	28,764,450	20,149,140	16,523,760
	2.5억원	46,608,320	30,668,550	21,736,275	17,790,960
	2.6억원	49,221,920	32,760,420	23,640,375	19,058,160
	2.7억원	51,855,320	35,024,220	25,544,475	20,325,360
	2.8억원	54,488,720	37,288,020	27,448,575	21,592,560
	2.9억원	57,122,120	39,551,820	29,352,675	22,859,760
	3억원	59,755,520	41,815,620	31,256,774	24,126,960
	3.1억원	62,388,920	44,369,820	33,160,875	25,394,160
	3.2억원	65,022,320	46,924,020	35,064,975	26,661,360
	3.3억원	67,655,720	49,478,220	36,969,075	28,036,800
	3.4억원	70,289,120	52,032,420	38,873,175	29,940,900
	3.5억원	72,922,520	54,586,620	40,777,275	31,845,000
	3.6억원	75,555,920	57,140,820	42,681,375	33,749,100
	3.7억원	78,189,320	59,695,020	44,585,475	35,653,200
	5억원	112,423,500	92,899,620	74,860,390	60,406,500
	10억원	244,093,520	224,516,820	204,444,789	184,531,160

13. 질문·조사

가.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③ 납세조합

④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⑤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⑥「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⑦ ①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⑧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⑨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나. 종교인소득 관련 특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에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14. 근로·자녀장려금

가. 종교인소득과 근로・자녀장려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므로(소득세법 제21조제3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 28)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지원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장려금과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합계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나. 근로장려세제(EITC)

① (개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 2015년부터 사업소득자로 확대

② (신청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세 부 내 용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거나 또는 30세 이상(단독가구), 부양 자녀나 배우자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 부양시 홑벌이가구 인정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85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18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225만원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③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 근로장려금의 산정 사례

단독 가구	6백만 미만 : 총급여×85/600	600~900만원 미만 : 85만원	900~1,300미만:85만원-(총급여액-900만원 × 85/400)
홑벌이 가구	9백만 미만 : 총급여×200/900	900~1,200만원 미만 : 200만원	1,200~2,100미만:200만원-(총급여액-1,200만원 × 200/900)
맞벌이 가구	1,000만 미만 : 총급여×250/1,000	1,000~1,300만원 미만 : 250만원	1,300~2,500미만:250만원-(총급여액-1,300만원 × 250/1,200)

다. 자녀장려세제(CTC)

① (개요) 2015년부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
② (신청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세 부 내 용
가구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③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 자녀장려금의 산정 사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하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다.

가족원 구성	총급여액	자 녀 장 려 금
홑벌이 가구	4천만원 미만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2,100만원 ~ 4,000만원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4천만원 미만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2,500만원 ~ 4,000만원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900분의 20]

라. 신청 기한

① 정기 : 매년 5월 1일 ~ 5월 30일 ② 기한 후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③ 신청기한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 감액된다.

마.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참고 1 종교인소득 관련 세부담 사례

※ 기부금은 총급여의 10%, 근로소득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적용

■ 1인 단독가구

소득	월 1,000,0000원		월 1,500,000원		월 2,000,000원	
구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연간소득 (총급여)	12,000,000	12,000,000	18,000,000	18,000,000	24,000,000	24,000,000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9,600,000	6,300,000	14,400,000	7,950,000	19,200,000	8,850,000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과세표준	900,000	4,200,000	2,100,000	8,550,000	3,300,000	13,650,000
산출세액	54,000	252,000	126,000	513,000	198,000	967,500
세액공제	70,000	269,000	70,000	278,900	70,000	415,250
결정세액	-	-	56,000	234,100	128,000	552,250

■ 2인(본인, 배우자) 홑벌이가구

소득	월 1,000,0000원		월 1,500,000원		월 2,000,000원	
구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연간소득 (총급여)	12,000,000	12,000,000	18,000,000	18,000,000	24,000,000	24,000,000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9,960,000	6,300,000	14,400,000	7,950,000	19,200,000	8,850,000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과세표준	-	2,700,000	600,000	7,050,000	1,800,000	12,150,000
산출세액	-	162,000	36,000	423,000	108,000	742,500
세액공제	-	219,000	70,000	232,650	700,000	347,750
결정세액	-	-	-	190,350	38,000	394,750

■ 3인(본인,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홑벌이가구

소득	월 1,000,0000원		월 1,500,000원		월 2,000,000원	
구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연간소득 (총급여)	12,000,000	12,000,000	18,000,000	18,000,000	24,000,000	24,000,000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9,960,000	6,300,000	14,400,000	7,950,000	19,200,000	8,850,000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과세표준	-	1,200,000	-	5,550,000	300,000	10,650,000
산출세액	-	72,000	-	333,000	36,000	639,000
세액공제	-	170,000	-	183,150	70,000	316,700
결정세액	-	-	-	149,850	-	322,300

참고 2	종교인과세에 대한 사례

1. 연간소득 3,000만원의 경우

① 월간사례비 × 12(개월) = 연간 사례비(총급여액)

연간소득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사례비를 일정하게 매월 250만원을 받는 경우, 12개월로 합산하면 연간 사례비는 3천만 원이 됩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만7세, 만15세의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② 연간사례비(총급여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을 구할 때 공제되는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하며, 필요경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연소득 3천만 원일 경우는 2~4천만원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가 필요경비인데, 계산해 보면

1,600만 원과 (3,000만 원 중 2,000만원의 초과분인 1,000만 원의 50%, 즉 500만 원)을 더하면 2,100만 원이 필요경비입니다.

연간 소득 3,000만 원에서 필요경비 2,100만 원을 빼면 900만원이 소득금액입니다.

⇨ 1,600만원 + 500만원 = 2,100만원(필요경비)

⇨ 3,000만원 - 2,100만원 = 900만원(소득금액)

③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금액 900만 원에서 소득공제액(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공제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되는데, 계산해 보면,

900만 원에서 600만 원(본인, 배우자, 자녀 2명×각 150만 원씩 단, 연소득100만 원 이하)을 뺀 300만원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

⇨ 900만원 - 600만원(150만원 * 4명) = 300만원

④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포함) =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 300만 원에 과세표준 소득세율 6%(1,200만 원이하기준)를 적용하면 18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 300만 원×6% = 18만 원

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를 하면 부담할 결정세액이 되는데,

즉 산출세액 18만 원에서 세액공제액이 30만 원(자녀2명)이므로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결정세액은 '0' 이며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2. 연간소득 5,000만원의 경우

① 월간사례비 × 12(개월) = 연간 사례비(총급여액)

연간소득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사례비를 일정하게 매월 약 416만 원을 받는 경우, 12개월로 합산하면 연간 사례비는 5,000만 원이 됩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만7세, 만15세의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② 연간사례비(총급여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을 구할 때 공제되는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하며, 필요경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연소득 5,000만 원일 경우는 4~6천만 원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600만 원+4,000만원 초과분의 30%'가 필요경비인데, 계산해 보면

2,600만 원과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초과분인 1,000만 원의 30%, 즉 300만 원)을 더하면 2,900만 원이 필요경비입니다.

연간소득 5,000만 원에서 필요경비 2,900만 원을 빼면 2,100만 원이 소득금액입니다.

⇨ 2,600만 원 + 300만 원 = 2,900만 원(필요경비)

⇨ 5,000만 원 - 2,900만 원 = 2,100만 원(소득금액)

③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금액 2,100만 원에서 소득공제액(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공제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되는데, 계산해 보면,

2,100만 원에서 600만 원(본인, 배우자, 자녀2명×각 150만원씩 단, 연소득100만 원 이하)을 뺀 1,500만 원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

⇨ 2,100만 원 - 600만 원(150만 원 × 4명) = 1,500만 원

④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포함) =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구간 1,200만 원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이 15%)세율에 따라 117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 72만 원+((1500만 원-1200만 원)×15%)=72만 원+45만 원=117 만원

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를 하면 부담할 결정세액이 되는데,

즉 산출세액 117만원에서 세액공제액이 30만원(자녀2명)이므로 결정세액은 87만원이며 부담할 세액은 종합소득세 87만원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10%) 87,000원을 합쳐서 957,000원입니다.

⇨ 117만원-30만원=87만 원

⇨ 종합소득세 870,000+지방소득세87,000=957,000원

참고 3 소득 수준별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세액 비교

연지급 및 월지급 단위(천원), 원천징수세액 단위(원)

연지급	월지급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자녀1	
		종교인	근로자	종교인	근로자	종교인	근로자
20,000	1,667	1,170	12,220	1,000	7,720	0	0
30,000	2,500	35,040	41,630	12,540	28,600	1,460	13,150
40,000	3,333	83,630	120,210	61,130	95,210	16,130	45,740
50,000	4,167	163,230	233,600	140,730	205,470	95,730	126,690
60,000	5,000	248,520	353,910	226,020	325,150	181,020	237,550
70,000	5,833	347,740	490,760	325,240	443,770	280,240	343,330
80,000	6,667	466,620	706,100	446,120	658,100	401,120	506,050
90,000	7,500	595,000	896,610	570,000	847,600	522,080	683,460
100,000	8,333	726,200	1,082,590	701,200	1,032,590	651,200	856,640

Ⅴ. 개정세법의 특징

개정 세법에서 정한 종교인소득 관련 내용중 특이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 종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세법에선 소득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수령한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21조 3항)

2. 소득 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종교인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소득세법 155조의 6)

3.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원천징수신고의무를 이행해야하지만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를 허용하였다.

4. 기타소득자임에도 부대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가 수령하는 부대경비 등은 원천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소득중 다음 항목은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 성질의 지급액(일직비, 여비, 차량유지비, 종교활동비 등)
- 자녀 출산/보육 수당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5. 기타소득자임에도 퇴직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독립적 지위에 있는 소득자에겐 현실적으로 퇴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6. 간주필요경비 계산시 추정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지급건 단위로 계산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 지급시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규모를 계산한 후 다시 월별로 배분한다. 이는 목회자의 소득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란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7.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종교인 소득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70조)

세무조사시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음에도 종교인소득 조사시 교회 자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세무공무원이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탈루 또는 오류의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기시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간혹 종교인이 의도치 않은 고발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8.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 확대

현행 세법은 종교단체를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단체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를 포함시켰다.

이는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법인이 아닌 사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9.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Ⅵ.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법

1. 신고 안내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 이외로부터 지급 받은 종교인소득이 있거나, 그 외에 타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화면에서 「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 안내」→「법령・질문・상담」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종교인소득자도 자격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

가.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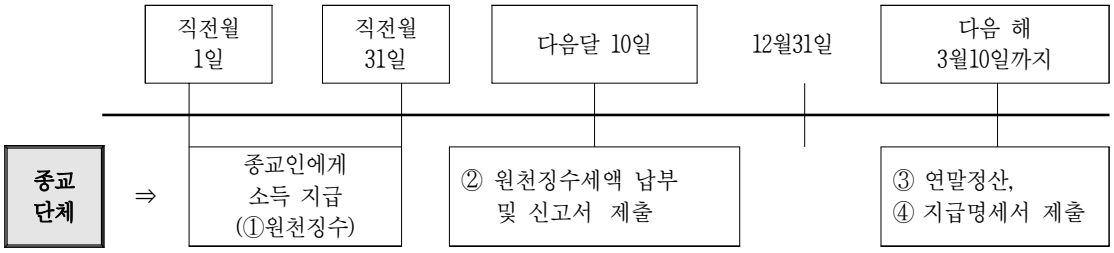

나. 원천징수 절차

→ § 소득세법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중략) 다음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중략)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중략)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다. 원천징수 신고 납부 절차

①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 매월 다음달 10일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10일
③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 다음 해 2월말일
→ 연말정산 영수증 및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제출** :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3월10일

라.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 있으며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서식이 달라진다.** → 다음연도 3.10.까지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별지 제23호서식(6)]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별지 제23호서식(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1)]

마. 연말정산 절차

일 정	구 분	절 차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종교인 (소득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종교단체 (징수의무자)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 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계산
	종교단체 (징수의무자)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다음 해 3월10일까지	종교단체 (징수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Ⅶ. 종교인소득 과세관련서식 목록표

번호	서식명	관련규정	내 용
①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소득규칙 21호의 2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규칙 21호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③	종교인 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소득규칙 25호의3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④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용)	소득규칙 37호(2)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⑤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규칙 25호(4)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⑥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소득규칙 23호(6)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⑦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소득규칙 23호(4)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⑧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4호(1)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	소득규칙 40호(5)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조특규칙 64호의2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신청서

※ 관련 서식은 [부록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Ⅷ.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소득 분류기준 결정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종교인의 소득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2. 사회보험료 관련 예산 추가 편입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교회 부담분이 발생한다. 그동안 목회자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지역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과는 다른 체계의 사회보험료를 교회가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 비용을 예산편성시 인건비 항목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사례비항목 구분기록 · 관리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항목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출산육아수당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사례비 지급시 이를 명확히 항목을 구분 기재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4. 경비 지급절차 개선

그 동안 목회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월정액(月定額)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직접 지출한 경비의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 하더라도 모두 목회자 개인의 소득으로 추정된다.

특히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가 비과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명의 금융 계좌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발생한 경비를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5. 관련 세무절차 숙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행정 사무원 또는 목회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택스에 가입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여러 지역교회 담당자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거나 지방회 단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6. 2018년 소득세 신고 관련 일정 예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

가.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분류하는 경우

2018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①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

- 매월 사례비 지급시 :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2018년 2월 사례비 지급시 : 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 2018년 3월 10일 : 2017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②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2018년 5월 1일 ~ 31일 : 목회자 스스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

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

2018년 지급하는 소득부터 개정세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부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2017년분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①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

- 2018년 1월 ~ : 매월 사례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 2018년 7월 1 일 ~ 10일 : 상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 일 ~ 10일 : 하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중 : 사례비 지급시 2018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3월 1 일 ~ 10일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②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2019년 5월 1일 ~ 31 일 : 목회자 스스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

참고 1 교회와 목회자 준비사항 목록표

준비사항	상세 내용
정관 및 재무회계세칙 구비	• 각종 사례금 등 지급근거 마련 •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기타 교회의 재정구분 및 집행기준 마련 • 예산수립 및 집행 산정근거 마련 • 내외부 감사 정당성 판단기준 제공
인사기록카드 작성 및 준비	•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자료 파악 • 과세대상 실재성 및 완전성 목적용 • 근태현황자료 구비(연월차 휴가 등)
연봉계약서 및 급여테이블 작성	• 청빙계약서 • 목회자 등 연봉 및 급여기준 마련 • 합리적 급여인상안 마련(예산확보용)
지급명세서 작성 및 비치	• 목회자 등 급여명세서 작성 • 과세대상 및 과세소득 범위 결정(간이세액표 기준) • 국세청 신고용 급여현황 및 세금자료 지원 • 목회자 등 4대 보험가입 현황 파악(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구분) • 5년 이상 과세자료 비치 및 보관
원천징수영수부 자료 비치	• 정기 국세청 제출자료 구비 • 근거과세 및 이행절차의 타당성 입증자료 활용 • 5년 이상 과세자료 비치 및 보관
목회자 준비사항	• 새로운 종교인 소득 통장 • 청빙계약서 • 소속증명서 • 기타

참고 2	세무서 제출서류 : 교회와 목회자

구분	세분	작성/제출서류	제출시기	비고
원천징수	월별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②) • 소득자별원천징수부 (⑤)	다음 달 10일	년 12회 신고
	반기별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①)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②) •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⑤)	• 반기별납부신청서 : 12월, 6월 • 상반기 원천징수 신고 : 7월 10일 • 하반기 원천징수 신고 : 다음해 1월 10일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 없이 특례인정 (년 2회 신 고)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청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③)	다음해 2월 말일 (원천징수영수증 : 3월 10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연말 정산용) (④)	다음해 2월 말일 (원천징수영수증 3월 10일)	종교인소득을 연말 정산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연말정산 포기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③)		
지급명세서	*종교활동비 총액기재란을 추가한 내용으로 변경될 예정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⑥)	다음 해 3월 10일	• 연말 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로 대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⑨)	다음 해 5월 말일	• 교회가 원천 징수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 적으로 소득 신고(년 1회)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신고
	종합소득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⑨)	다음 해 5월 말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⑩)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신고

Ⅸ. 종교단체의 세무관리

1. 종교단체(교회)의 세무관리

종교단체는 개별적으로 사단이나 재단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총회에 소속 되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을 위하여 독립적인 운영에 관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단체로 개인단체와 법인단체로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하며 개인단체(×××-89-××××××)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로 구분하여 발급되며 만약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아야 한다.

→ **개별교회**는 총회 또는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총회 또는 유지재단에 속한 지점법인(×××-85-××××××)이 아닌 법인단체(×××-82-××××××)로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가. 종교단체의 성격

종교단체(×××-82-××××××)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제1조 제2호의 규정과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을 포함하는 단체로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 종교단체는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 여부 판단한다.
▶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있어야 한다.

나. 종교단체의 납세의무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하여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출연재산을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7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

Ⓐ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자산과 부채, 손익을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와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중 선택 가능하다.

다. 종교단체의 세무신고

① 종교단체(교회)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나 종교단체의 설립 당시 법령 및 정관상 필요한 장부와 내부규정에 따른 장부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교회정관 또는 규정 Ⓒ 소속 증명

Ⓓ 대표자 증명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교회소유(재단편입)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② 종교단체에 기타 수익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89-×)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며, 법인(×-81-×)은 사업연도에 맞추어 법인세로 신고하고 Ⓐ·Ⓑ 이외의 기타 수익사업이 있어 종교단체가 사업의 주체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 은행이자가 발생한 소득
Ⓒ 부동산임대로 발생한 소득
Ⓓ 카페, 간이식음료, 동호회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라. 종교단체(교회)가 다음 예시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 유의사항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평생교육단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

①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행위 또는 예배 목적 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종교단체(법인)의 정관에 관련 목적사업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종교단체(교회)는 예시한 사업의 주체로 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시설단체로 승인받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 받아야 한다.

2. 종교단체(교회)의 납세협력 의무

종교단체(교회)는 공익법인으로 다음의 각종 납세협력 의무가 있다
① 결산에 관한 보고서 등 서류제출의무
②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③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④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⑤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⑥ 결산서류 공시의무
⑦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제출의무
⑧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

→ 종교단체는 기부금발급명세서를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의무, 5년간 보관의무가 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최근 2년이내 의무불이행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 ㉯ 최근 3년간 발급명세서 미보관, ㉰ 최근 3년이내 기부금액, 인적사항 등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 합계액 5천만원) 명단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3. 종교단체(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보관 및 제출의무

가. 도입 배경

○ 기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정에서의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

<법인세법 §112의 2(‘05.12.31 신설, ’ 07.12. 31개정 등)> 연도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06.1.1이후 기부분 중 제출대상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작성** **(개인기부자의 경우 소득세법 §160조의 3 규정 적용)**

나. 작성대상

[연도별 기준금액 초과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08.12.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 ‘09.1.1일부터 ’ 09.12.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 ‘10.1.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다. 작성 ● 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당초 가산세 적용대상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2010년1월1일 이후 기부분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확대

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발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종교단체(교회)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종교단체(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할 경우 시, 군, 구청 지적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 받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발급 받은 「고유번호등록증명서」를 반드시 같이 보관해야 한다.

→ §부동산 등기법제41조의 2 제1항 제3호)

5. 종교단체(교회)에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

세금의 부과 주체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구분되며 종교단체(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가 부과되며 부동산의 매매 및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Ⅹ. Q & A

Q1.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A1.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2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인가요?

A2.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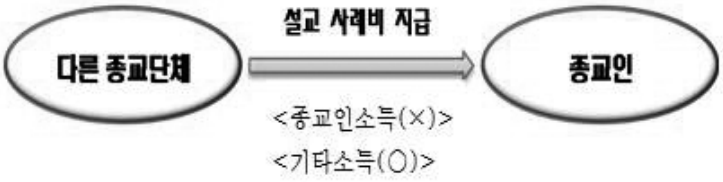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그 필요경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종교인소득 필요경비는 점점 체감하지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80%입니다.

Q3.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A3.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4.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나요?

A4.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5.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6. 심방사례비나 주례비와 같이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 직접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나요?

A6. 종교인소득도 아니고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교인들이 교회에 특별헌금을 하고 교회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Q7.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8.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8.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년 적용유예)

Q9.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나요?

A9.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교회는 면세특권이 있지만(단,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면 특권을 박탈당함) 성직자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혜택(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을 납부합니다. 그들은 재임하는 동안 교회가 성직자를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을 납부했을 경우 은퇴한 성직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은퇴한 성직자는 정부로부터 사회보장기금과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성직자는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국가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교회세)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성직자는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들은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보조금수령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Q10. 세무조사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0. 세무조사는 교회(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지급명세서, 목회자소득에 관한 사무총회 결의서, 정관규정 등이 대상이 되고, 조사대상자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등입니다.

원청징수를 하지 않고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종교단체(교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이므로 질문 조사대상이 됩니다.

Q11.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요?

A11.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일·노동을 한 결과 수령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12.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통장에 공적으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2.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13. 다른 소득이 있는 이중직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13. 그 다음해 5월 사례비 소득과 이중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14. 지교회 소속목회자들의 소득분류는 동일해야 하나요?

A14.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므로 같은 교회 소속 목회자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15. 구제비, 선교비를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인가요?
A15. 선교비 등의 헌금을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해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 수령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계좌로 수령한 금전을 바로 교회 계좌로 입금시켜서 교회명의로 집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목회자가 수령한 사례비의 대부분을 다시 헌금으로 교회에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 기준금액을 헌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A16. 목회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목회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교회로 헌금하는 경우는 송금(또는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선교비 등의 헌금을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해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 나중에 헌금을 얼마를 했더라도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교회 결산서상 사례비는 실제 지급한 총액으로 표시하고, 헌금 수입액도 헌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17. 은퇴 원로목회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어느 소득으로 분류하나요?
A17. 실질적인 퇴직금이 아니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야하는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5항)

Q18. 교단연금 가입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A18. 교단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이 법으로 규정한 공적연금이 아니므로 교단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Q19.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A19.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가족이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대상자가 되므로 기타소득자는 지역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Q20. 목회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20. 지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Q21.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만 하나요?
A21.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만 종교인 소득

의 경우 교회는 원천징수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2. 교회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 개인이 소득세 신고할 수 있나요?
A22.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개별적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Q23. 교회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목회자 개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3. 교회가 부담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무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Q24. 급여지급항목의 명칭을 변경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A24. 지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수령하는 경우, 단순히 지급명칭을 변경한다고 비과세 소득이 되지 않으며, 지급성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Q25. 매월 지급하는 사례비 관련 소득세 징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5. ① 매월급여 지급일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합니다.
②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6개월 단위로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에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③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시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④ 다음 해 2월 말에는 급여지급 관련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를 관할세무서로 제출합니다.

Q26. 사역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같은 부대경비들도 신고할 소득에 포함되나요?
A26.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 변상액과 교회가 소유,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Q27. 외부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게재하고 받은 강사료, 원고료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A27. 소속된 지역교회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교회)가 종교관련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강연료에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20%)을 곱하여**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강연료 등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25만원 미만은 원천징수가 제외되나 기타소득 지급명세 등의 소득자료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 이면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부가 종결되고, 초과되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Q28. 교회가 6개월(반기) 단위로 원천징수하는 시기를 매월 신고로 변경할 수 있나요?
A28. 반기납부를 포기하면 매월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9. 교회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수가 89인데 문제는 없나요 ?
A29. 소득세 신고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자리 번호가 82번이고 89번은 비리영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0. 관할 세무서 코드와 계좌번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0.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1. 소득세를 납부하면 사회보험(4대 보험, 국민, 건강 등)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A31. 소득세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인원이 1인 이상이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면 관련 자료가 관련 공단으로 통보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이 교회로 발송됩니다.

○ 종교단체(교회)와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 공적보험료 → 근로소득인 경우

종교단체(교회) 소속 유급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공적보험료를 다음 비율로 원천징수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고지하며 각각 납부합니다. [2018년도 기준]

구분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실업급여	고용안정	
본인부담	8.5	4.5	3.12	0.23	0.65	-	-
교회부담	9.53	4.5	3.12	0.23	0.65	0.25	0.78

→ 퇴직연금은 종교단체(교회) 소속 상시고용인원이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종교단체(교회) 소속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2대 공적보험료 → 기타소득인 경우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공적보험료를 본인 부담으로 원천징수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실업급여	고용안정	
본인부담	15.7	9	6.24	0.46	-	-	-

→ 종교관련 종사자가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Q32. 사례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규모는 ?

A32.

소득규모	필요경비율
2천만원 이하	과세대상 소득의 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Q3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3(1).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40세 이상이며 가구 총소득이 일정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 : 2,100만원, 맞벌이가족: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A33(2).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 규모에 따라 자녀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Q3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4.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과 미리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합계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Q35. 사모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인가요?

A35. 비과세 학자금은 본인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말하므로 본인이 아닌 사모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

Q36. 목회자가 자기소유의 집에 살면서 교회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고, 아파트관리비를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나요?

A36. 종교인소득으로 모두 과세됩니다.

Q37.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A37. 종교인소득 과세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2018년 1월분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부터 매월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6개월분을 모아서 2018년 7월과 2019년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Q38. 자기 교회 소속목회자가 아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경우 교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38. 교회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Q39. 과세항목 누락 및 미보고시 사후 대책이 있나요?

A39.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탈세신고나 교회분열시 내부자들의 탈세제보가 있을 경우에도 과세당국은 바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는 가급적 세무조사가 종교탄압이나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록 1] 종교인소득 과세관련서식
〈표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표 2〉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표 3〉 종교인 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표 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 연말정산용)
〈표 5〉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표 6〉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표 7〉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표 8〉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표 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
〈표 1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록 2]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부록 3] 교회 정관 견본
[부록 4] 교회 재정 운용 규칙 견본
[부록 5] 교회당 내 사택 전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대책

<표 1>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7. 3. 10.>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신규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		② 평균인원수 (① / 월수)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단위: 원)

월	인원	적 용 연 도		직 전 연 도		비 고
		총지급액	소득세 징수액	총지급액	소득세 징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명					

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②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종교단체의 경우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의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2>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3.10.> [시행일:2018.1.1.] 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소득지급(과세미달, 일부비과세 포함) ④ 인원	⑤ 총지급액	징수세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⑩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금융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신설 2017. 3. 10.>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원천 징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종교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포 기) 내 용

⑨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종교인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⑩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하는 종교인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최초로 연말정산한 과 세 기 간	년도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관리번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유의사항

※ 이 신청(포기)서는 최초로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려는(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4>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2)] <신설 2017. 3. 10.>

(5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6세 이하: (　.　.　.) 이후 출생(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소득공제	기부금 (이월분)	법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2017년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계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IV.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25%)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		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종(전) 근무지 명세	종(전)종교단체명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 결정세액		
2. 연금・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 ②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 5>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4)] <신설 2017. 3. 10.>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관련)

징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 번호(고유번호)	– –	가족 사항	⑦ 배 우 자	유・무	⑪ 70세 이상	명
	③ 소 재 지					부양 가족 ⑧ 20세 이하	명	⑫ 장 애 인	명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⑨ 60세 이상	명	⑬ 부 녀 자	여・부
	⑥ 주 소					⑩ 신고서제출일	. . .	⑭ 한 부 모	여・부

⑮ 월 별	⑯ 지급일	⑰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원 천 징 수 세 액		⑳ 월 별	㉑ 지급일	㉒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원천징수세액	
			⑱ 소득세	⑲ 지방소득세				㉓ 소득세	㉔ 지방소득세
1월분	. . .				7월분	. . .			
2월분	. . .				8월분	. . .			
3월분	. . .				9월분	. . .			
4월분	. . .				10월분	. . .			
5월분	. . .				11월분	. . .			
6월분	. . .				12월분	. . .			
					계				

㉕ 종교인소득(=⑰+㉒)	소득금액의 계산		
	㉖ 종교인소득(=㉕)	㉗ 필요경비	㉘ 소득금액(㉖-㉗)

㉙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㉚ 본 인		㊵ 종합소득공제계		㊶결 정 세 액			
	㉛ 배 우 자		㊶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㉜ 부양가족		㊷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㊷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인적공제 추가공제	㉝ 경로우대		㊸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액					
	㉞ 장 애 인		㊹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㊸ 주(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㉟ 부 녀 자		㊺ 산 출 세 액					
	㊱ 한부모가족		㊻ 세액공제 ㊻ 자녀세액공제		㊹ 차감원천징수세액			
㊲ 연 금 보 험 료 공 제			㊼ 연금계좌 세액공제					
			㊽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이월분)	㊳ 지정기부금		㊾ 표준세액공제		㊺ 차감환급세액			
	㊴ 지정기부금 외		㊿ 외국납부세액공제					

364㎜×257㎜ (백상지(1종) 70g/㎡)

<표 6>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신설 2017. 3. 10.>

관리번호	
① 귀속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종교인 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 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소득 금액	⑮ 종교인소득(⑭)	⑯ 필요경비	⑰ 소득금액(⑮-⑯)

⑱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⑰)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⑲ 본 인		㉛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㊴ 결정세액					
		⑳ 배우자		㉜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 세액	㊵ 종(전) 근무지				
		㉑ 부양가족 (명)		㉝ 산출세액			㊶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㉒ 경로우대 (명)		㉞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자녀(명)	㊷ 차감 납부할 세액					
		㉓ 장애인 (명)			6세이하(명)						
					출산·입양자(명)						
		㉔ 부녀자		㉟ 연금계좌 세액공제							
		㉕ 한부모가족		㊱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㉖ 연금보험료공제					법정						
㉗ 기부금(이월분)					우리사주조합						
㉘ 종합소득공제 계					지정						
㉙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㊲ 표준세액공제							
㉚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㊳ 외국납부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㊸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㉛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㊷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7.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백상지 80g/㎡)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연간 소득금액 계	⑧ 세액 집계현황			
							⑨ 소득세	⑩ 지방 소득세	⑪ 농어촌특별세	⑫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⑬ 소득 구분코드	⑭ 소득자 성명(상호)	⑮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⑯ 내·외 국인	⑰ 지급 연도	⑱ 지급 건수	⑲ (연간) 지급총액	⑳ 필요 경비	㉑ 소득 금액	㉒ 세율	㉓ 소득세	㉔ 지방 소득세	㉕ 농어촌 특별세	㉖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⑬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㉓란부터 ㉖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와 ⑦ 소득자별 연간소득금액(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⑭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⑱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⑯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⑲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소득금액란은 ⑲ (연간)지급총액에서 ⑳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⑬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8>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7. 3. 10.> (8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⑯-1 납세조합	합 계
I 근무처별소득명세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⑯ 계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⑱ 국외근로	M0X					
	⑱-1 야간근로수당	O0X					
	⑱-2 출산 · 보육수당	Q0X					
	⑱-4 연구보조비	H0X					
	⑱-5						
	⑱-6						
	~						
	⑱-29						
	⑲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III 세액명세	구 분			㉘ 소 득 세	㉙ 지방소득세	㉚ 농어촌특별세
	㉒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㉓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㉔ 주(현)근무지				
	㉕ 납부특례세액					
	㉖ 차 감 징 수 세 액(㉒-㉓-㉔-㉕)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Ⅳ 정산명세			㉑ 총급여(⑯,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㉒ 근로소득공제				
			㉓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㉔ 본 인				
			㉕ 배 우 자				
			㉖ 부 양 가 족(명)				
		추가공제	㉗ 경 로 우 대(명)				
			㉘ 장 애 인(명)				
			㉙ 부 녀 자				
			㉚ 한 부 모 가 족				
		연금보험료공제	㉛ 국민연금보험료				
			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특별소득공제	㉝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고용보험료			
			㉞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㉟ 기부금(이월분)				
			㊱ 계				
	㊲ 차감소득금액						
		㊳ 개인연금저축					
		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㊵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㊶ 투자조합출자 등					
		㊷ 신용카드등 사용액					
		㊸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㊹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㊺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㊻ 그 밖의 소득공제 계					
	㊼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㊽ 종합소득 과세표준					
㊾ 산출세액					
세액감면	㊿ 「소득세법」				
	(51) 「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3) 조세조약				
	(54) 세 액 감 면 계				
세액공제	(55) 근로소득				
	(56)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6세 이하 (명)			
		출산·입양자 (명)			
	연금계좌	(57)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9)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60)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1)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2)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3)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4) 계			
		(65) 표준세액공제			
	(66) 납세조합공제				
	(67) 주택차입금				
	(68) 외국납부				
	(69)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70) 세 액 공 제 계				
(71) 결 정 세 액(㊾-(54)-(70))					

㊼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이하		건강·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등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㉖ 비과세소득 계"란 및 "㉖-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⑯-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㊼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㉑ 총급여"란에는 "⑯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⑯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㉝~㉟)"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㊱~㊻)"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9. "연금계좌(㊼~㊾)"란과 "특별세액공제(㊿~(65))"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표 9>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신설 2017. 3. 10.>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40 기한 후 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⑨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㉛ 총수입금액: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㉜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㉝ 종합소득금액: ㉛ - ㉜	
㉞ 소득공제: ㉟~㊺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㊻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㉟ 본 인		
					㊱ 배 우 자		
					㊲ 부 양 가 족		
				추가공제	㊳ 경 로 우 대 자		
					㊴ 장 애 인		
					㊵ 부 녀 자		
					㊶ 한 부 모 가 족		

㊷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㊹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㊺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㊻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㊼ 과세표준: ㉝ - ㉞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㊽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㊾ 산출세액: ㊼ × ㊽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㊿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51~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5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출산 · 입양 자녀 ※ 출산 · 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㊸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㊹ 표준세액공제: 7만원(㊶~㊸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㊺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㊻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㊼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㊽ 결정세액: ㊾ - ㊿("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㊾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㊿~(62)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㊿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 반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61)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62) 납부(환급)불성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63) 총결정세액: ㊽+㊾						
기납부세액	(64) 원천징수세액[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65)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63)-(64)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66)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47)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67)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68) 산출세액: (66)×(67)－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69) 세액공제・감면: ㊿ ×10%	
(70) 가산세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71)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64)×10%	
(72)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68)-(69)+(70)-(7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표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17. 3. 17.>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년 귀속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 기( ) 기한후( )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❷ 가구원, ❹ 전세금 명세, ❺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3·4쪽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❷ 가구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Q1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는 40세 이상(.12.31 이전 출생)입니까?		예 [ ] 아니오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예 [ ] 아니오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 2천 100만원 / 2천 500만원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 ] 아니오 [ ]
공통	QA.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B.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입니다.

⑩ 임차인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원	[ ]

❺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근로소득(총급여액)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소득	㉑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㉗ 업종코드	㉘ 조정률	㉙ 사업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㉛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기재	원	원
감액금액	㉜ 재산 1억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을 기재	원	원
	㉝ 기 한 후 신 청	(재산합계 1억원 미만) ㉛ × 10%	원	원
		(재산합계 1억원 이상) (㉛-㉜) × 10%	원	원
㉞ 신청금액(㉛-㉜-㉝)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원	원

* 자녀장려금은 신청금액(㉞)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❼ 수령계좌 신고	㉟ 금융회사등		㊱ 계좌번호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I)

※ 1쪽 ❷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❷ 가구원			-			-
			-			-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⑩ 임차인 (세입자)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 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❹ 전세금 명세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임차인 (세입자) 성 명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⑰ 소득자		⑱ 상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근로소득
❺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㉑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㉗ 업종코드	㉘ 조정률	㉙ 사업소득
	사업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부[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부[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부[ ]			원		%	원

[부록 2]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제4항 관련)

월지급액(천원)		공제대상 가족 수 별 원천징수 세액(원)									
이상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245	1,250	-	-	-	-	-	-	-	-	-	-
1,495	1,500	1,000	-	-	-	-	-	-	-	-	-
1,650	1,660	1,160	1,000	-	-	-	-	-	-	-	-
1,950	1,960	2,640	1,000	1,000	-	-	-	-	-	-	-
1,990	2,000	5,000	1,030	1,000	-	-	-	-	-	-	-
2,200	2,210	17,370	1,240	1,000	-	-	-	-	-	-	-
2,490	2,500	34,450	11,950	1,030	1,450	1,000	-	-	-	-	-
2,990	3,000	63,900	41,400	18,900	1,950	1,000	1,050	1,210	-	-	-
3,480	3,500	98,700	76,200	53,700	31,200	8,700	1,300	1,460	1,290	1,100	-
3,980	4,000	146,150	123,650	101,150	78,650	56,150	33,650	11,150	1,790	1,850	1,400
4,480	4,500	194,780	172,280	149,780	127,280	104,780	82,280	59,780	37,280	14,780	2,400
4,980	5,000	246,280	223,780	201,280	178,780	156,280	133,780	111,280	88,780	66,280	43,780
5,480	5,500	306,600	284,100	261,600	239,100	216,600	194,100	171,600	149,100	126,600	104,100
5,980	6,000	370,700	348,200	325,700	303,200	280,700	258,200	235,700	213,200	190,700	168,200
6,480	6,500	442,700	420,200	397,700	375,200	352,700	330,200	307,700	285,200	262,700	240,200
6,980	7,000	514700	492,200	469,700	447,200	424,700	402,200	379,700	357,200	334,700	312,200
7,480	7,500	591,800	566,800	541,800	519,200	496,700	474,200	451,700	429,200	406,700	384,200
7,980	8,000	671,800	646,800	621,800	596,800	571,800	546,800	523,700	501,200	478,700	456,200
8,480	8,500	751,800	726,800	701,800	676,800	651,800	626,800	601,800	576,800	551,800	528,200
8,980	9,000	831,800	806,800	781,800	756,800	731,800	706,800	681,800	656,800	631,800	606,800
9,480	9,500	911,800	886,800	861,800	836,800	811,800	786,800	761,800	736,800	711,800	686,800
9,980	10,000	991,800	966,800	941,800	916,800	891,800	866,800	841,800	816,800	791,800	766,800
10,480	10,500	1,071,800	1,046,800	1,021,800	996,800	971,800	946,800	921,800	896,800	871,800	846,800
10,980	11,000	1,151,800	1,126,800	1,101,800	1,076,800	1,051,800	1,026,800	1,001,800	976,800	951,800	926,800
11,480	11,500	1,231,800	1,206,800	1,181,800	1,156,800	1,131,800	1,106,800	1,081,800	1,056,800	1,031,800	1,006,800
12,000	12,000	1,315,000	1,290,000	1,265,000	1,240,000	1,215,000	1,190,000	1,165,000	1,140,000	1,115,000	1,090,000
12,000	초과	12,000천원 초과금액의 20%상당액									

※ 이 표는 전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중 소득수준 50만원 단위로 일부만 발췌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

[부록 3] 교회 정관 견본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이하 “본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3조(설립 목적)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되 특히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리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신앙의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정 목적)
이 정관은 교회의 설립 목적을 유지하며 거룩함과 합리적 운영과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제 정한 것이며 은혜로운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5조(사업) 본 교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교육사업
3. 구호사업
4. 사회사업
5. 사회복지사업
6. 아동복지사업
7. 영유아 보육시설 사업
8. 기타 복음사업에 기여하는 일

제 2 장 교회의 조직과 직무

제6조(대표권) 본 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7조(회원자격) 회원은 본 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예문에 따라 서약하고 입회한 20세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주일성수(공적예배 출석)
2. 십일조 생활
3. 기도 생활
4. 전도 생활
5. 봉사 생활

제9조(사무총회)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간 경과보고를 받으며 신년도의 제반 인사, 재정, 사업계획안을 의결하는 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이다.

1. 조직
   가. 사무총회는 제7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2. 소집
   가.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나. 정기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일시, 장소와 의제를 2주일 전 예배 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임시 사무총회는 1주일 전에 예배 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3. 회무
   가. 사무총회는 당회 또는 직원회로부터 연간 인사보고와 사업 및 재산목록, 회계 결산보고를 받는다.
   나. 사무총회는 본 교회 각 기관의 경과보고를 받는다.
   다. 사무총회는 교역자와 장로의 인사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며 당회 또는 치리목사가 선출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일반직원을 임명 공포한다.
   라. 사무총회는 당회나 치리목사가 제출한 신년도 사업계획안을 인준하고 예산안을 협찬한다.
   마. 사무총회는 교회재산의 조성과정, 관리사항 등의 보고를 받고, 그 처리를 승인한다.
   바. 교회재산 조성과정과 재정현황 및 인사관리 상황에 관한 정기 사무총회 회의록 및 임시 사무총회 회의록은 사무총회 종결 후 즉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회)

직원회의 조직과 회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가. 직원회는 교역자와 교직자로 조직한다.
   나. 직원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단,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위임한 당회원이 대행한다.
   (담임전도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치리목사가 의장이 되며, 위임한 때에는 담임전도사가 대행한다)
2. 소집
   가. 직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한다.
   나. 정기 직원회는 분기별로, 임시 직원회는 필요시에 의장이 소집하며 성수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3. 회무
   가.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집행을 보고받고 각 기관의 경과보고를 받으며, 당회 또는 예산위원회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협찬한다.
   나. 재정관리
      1) 본 교회의 모든 재정 출납은 수입 및 지출 결의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2) 재정출납을 위하여 통장명의는 교회 명의로 하고, 인장은 담임목사가 맡으며, 출납은 재정부장을 경유하여 담임목사가 결재한다.
      3)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 외의 금전 출납은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4) 회계는 정기직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당회)

당회의 조직과 회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가. 당회는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나.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당회원 중 1인이 된다.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교회는 지방회에서 파송한 치리목사가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2. 소집
   가. 정기당회는 2개월에 1회 당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필요시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당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당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나.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다. 당회의 일반적인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3. 회무
   가. 교회의 각종 인사사항 결의
   나. 치리 및 특별집회 결정 및 강사 선임, 각 기관행사 강사선정 인준
   다. 교회 및 각 기관의 회계감사
   라. 각종 예식 거행 결의
   마. 교회의 각종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결의

제 3 장 재산 및 재정의 관리

제12조(재산)

1. 본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중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한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교회목적 기본재산을 구성한다.
2. 교회의 토지나 건물 중 직접 종교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본당, 교육관, 담임목사 사택, 기도원 및 법률에 의한 취득세 면제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 보존한다.
3. 본교회의 기타 부동산은 본교회의 명의로 소유한다

제13조(재산관리)

1. 기본재산 중 본당과 중요재산을 처분 시(매매, 담보제공, 교환)에는 당회의 결의 후 사무총회 결의로 재산 처분 절차를 시행한다.
2. 기본재산 중 본당과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사무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3. 목회자의 가족 및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본교회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4조(재정)

1.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 및 헌물과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2. 교인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본교회에 헌납했을 때는 헌납과 함께 본교회의 재산이 되며 헌납자는 그 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3. 재정수입은 헌금에 의존하며 헌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일헌금, 2) 십일조헌금, 3) 건축헌금, 4) 감사헌금, 5) 절기헌금, 6) 특별헌금,

7) 선교 헌금, 8) 기타헌금 등
4.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명의는 교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5. 재정 결산은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마감일로 정하여 감사를 받은 후 당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회의 결의로 결산한다.
6. 감사는 매년 2회의 정기 감사를 하며, 필요시 당회의 승인을 받아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운용 원칙)
1. 청지기적 사명 :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도록 청지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여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 총액 표시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교회 회계 결산 시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투명성 원칙 : 재정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보고하되 개별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개별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4. 건전운용원칙 : 재정은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차입할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 계획을 세워 당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록물 유지 :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 원칙)
1. 회계연도 :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1일부터 익년 11월30일 까지로 한다.
2. 회계처리 : 본 교회의 기장은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회 결의가 있는 경우 복식부기로 전환할 수 있다.
3. 구분기장 : 본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와 그 밖의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기장한다
4. 보존 연한 :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서류는 당해회계연도 종료일 익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별도로 보존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4 장　부칙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교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소속 지방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정관 변경)
본 교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에서 당회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과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정, 개정)
본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교회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회에서 각부서의 운영세칙, 회칙, 규칙 등을 제정(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시행)
본 교회의 정관은 .....년.....월.....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견본이며 해 지교회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4] 교회 재정 운용 규칙 견본

교회 재정 운용 규칙

제1장 총 칙

제00조(재정운용의 원칙)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① 청지기적 사명 :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균형 :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③ 총액표시 :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투명성 :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건전성 :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직을 준수한다.

1.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무총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할 수는 있다.
2. 반기(또는 회계기간)별 수입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3. 매 회계연도별로 잉여자금이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며(zero base),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교 및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지 않는다.

⑥ 문서화 :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⑦ 기능의 분리 :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제2장 회계 원칙

제00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00월 1일부터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00조(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조(구분기장•회계)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활동(목회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제00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①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예산 및 결산

제00조(예산)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은 목회자의 사례비 예산과 목회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무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00조(결산 및 공시) 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1. 예산서 2.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3.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4.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5.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6. 감사보고서

제00조(감사)

① 사무총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②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④ 교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감사의 감사보고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전문가인 기독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사무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 입

제00조(수입)

①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②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제00조(헌금의 구분과 관리)

①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 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②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회명의의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통장, 목회활동비 통장, 기타 교회운영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④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지 출

제1절 사례비 및 보수

제00조(사례비, 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③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사무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사무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이외에 '교역자·직원복지비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조(퇴직금)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목회(활동)비

제00조(성격) 목회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사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조(사용목적)

① 목회비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② 목회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외 선교활동 (미자립교회, 선교사, 원로목사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2. 예배목회활동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 자료, 의복 등 제비용 지출)
3. 구호 및 교육활동 (교회내외 구호 및 장학사업 등)
4. 기타 목회활동 (품위유지, 건강관리, 휴양, 교제활동 등)
5. 복음사업 접대활동 (교회와 관련된 자에 대한 식대, 선물, 애경사 등)
6. 기타 복음사업에 기여하는 일

제00조(목회비의 확보)

① 목회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② 정기사무총회에서는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00조(수령 및 관리) 목회비는 교회 명의의 '목회비통장'으로 입금하며, 목회비의 관리는 목회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00조(지출증빙)

① 목회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비 전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② 목회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목회행정실, 또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 본 규칙은 견본이며 해 지교회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5] 교회당 내 사택 전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대책

○ 교회건축물의 전기 설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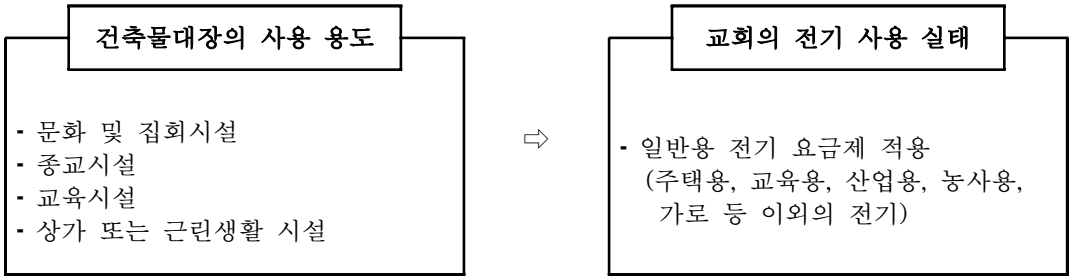

○ 교회건축물의 내 사택(주거시설) 사용 시 한전의 전기 설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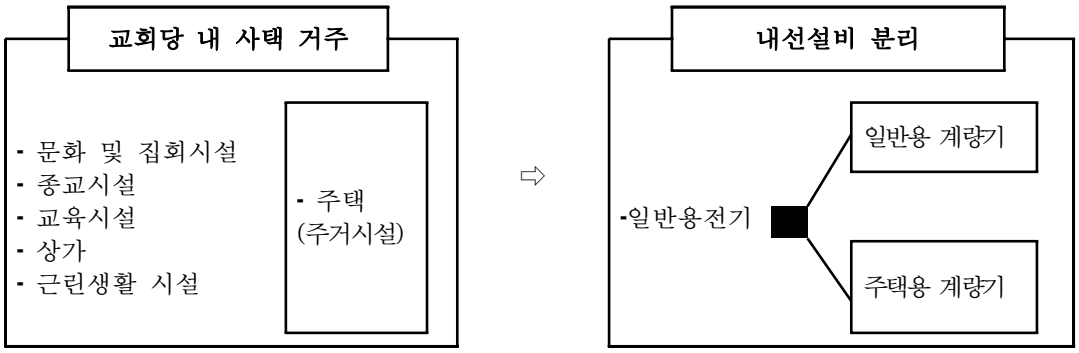

○ 불법 전기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

- 사유
  내선설비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용 전기 계속 사용
  전기 시공사의 정확한 시설 회피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다르게 사택(주거시설) 사용
- 신고사례 급증: 검침원 신고 또는 교회 내부 신고에 의하여 부과
- 부과기준: 주택 내의 가전제품을 파악하여 전기요금 산출

○ 문제점 및 대안

- 가전제품을 파악하여 전기요금을 산출하므로 실제 사용량과 상이함
- 담임목사관은 종교시설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면세함으로 일반용 전기 사용 허용 필요
- 타종교와의 형평성 문제: 성당 내 사제관, 사찰 내 승려 주거시설 비교 필요
- 이행강제기간 부여: 기간 내 내선설비분리 여부 확인 후 부과하는 것이 타당